

RFID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사용 안내

| 운영기관 및 시스템명 |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(www.allbaro.or.kr)

| 법률적 근거 |

- ①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(폐기물 인계·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)
- ②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·인수 등에 관한 고시

| 사용자 | 의료폐기물 배출자, 수집·운반자, 처리자

| 관리·감독 |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방환경관서의 장

| 배출자의 RFID기반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|

□ 고정형리더기 사용시

폐기물 입고 방법



① [폐기물 입고] 버튼 클릭



② 전자저울 계근 및 리더기 인식



③ [첫화면으로] 버튼 클릭하여 폐기물입고처리 완료

폐기물 출고 방법



① [폐기물 출고] 버튼 클릭



② 창고에 입고 되어있는 폐기물 입고정보 화면 확인



③ 카트에 폐기물을 실은 후 고정형 리더기 통과



④ 리더기 인식 완료 후 [작업종료] 버튼 클릭



⑤ [운반자인증] 버튼 클릭 후 운반자 인식카드 인증



⑥ [전송] 버튼 클릭하여 폐기물출고처리 완료

□ 휴대용리더기 사용시



① 전용용기에 태그부착



② 비콘태그로 배출자인증



③ 운반자 인수작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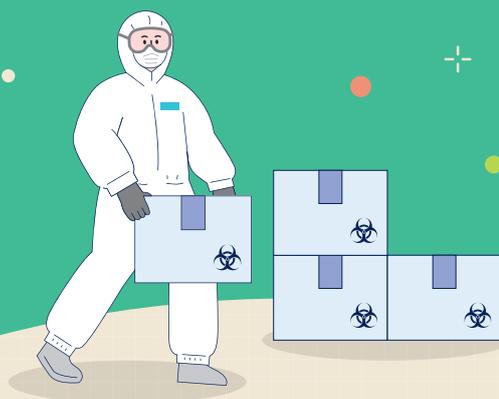
④ [전송] 버튼 클릭하여 운반자 인수처리 완료

배출자 업무

운반자 업무

배출자 및 수집·운반자 유의사항

- 1 배출자는 폐기물정보가 담긴 전자태그를 전용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. (전용용기 1개당 전자태그 1개)
- 2 배출자가 인계내역을 확인 후, 운반자는 휴대용리더기에 인식된 비콘태그 정보를 선택해야 합니다.
※ 비콘태그 :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인증용 태그
- 3 배출자 및 수집·운반자는 폐기물 인계·인수 당일 폐기물 인계·인수 전송내역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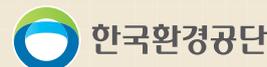


문의처

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정보관리부
032-590-4262, 4265, 4268



환경부



한국환경공단

www.allbaro.or.kr

www.keco.or.kr

의료폐기물관리

이렇게 바뀝니다!

- ☑ 배출자 인증방식
- ☑ 운반자 대체입력방식
- ☑ 처리장 입고방식



환경부



한국환경공단

배출자 인증방식이 바뀝니다!

▶ 시행일 : 2022. 10. 1.

지금은

휴대용리더기로 배출자 인증카드 인식
(또는 배출자 시리얼번호 입력)

앞으로는

운반자가 배출자 보관창고 방문시
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비콘태그 자동인식



• 배출자 인증 비콘태그

폐기물 인계·인수 시 휴대용리더기로 배출자 정보를 자동전송함으로써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장치로 배출자 보관창고 주변에 설치 (배출자 구매·설치)

대체입력 방식이 바뀝니다!

▶ 배출자와 운반자간 인계인수 내역을 대체입력할 경우

지금은

배출자와 운반자간 인계·인수 내역을
올바로시스템에 대체입력시
폐기물 종류, 성상, 개수, 중량 등 정보만 입력

앞으로는

폐기물정보 외에 추가로
전용용기에 부착된 태그번호까지 입력



• 대체입력사유

- 장비개선·변경·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
- 천재지변이나 화재, 돌발적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

처리장 입고방식이 바뀝니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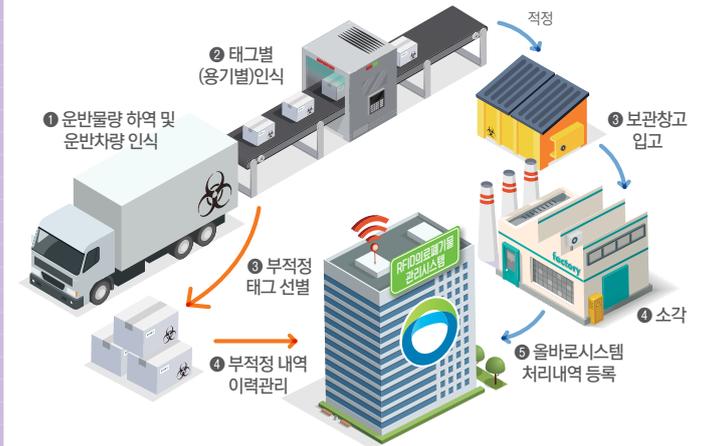
▶ 시행일 : 2023. 3. 1.

지금은

(차량단위 입고) 운반차량용 인증카드를
처리장 내 고정형리더기에 인식

앞으로는

(용기단위 입고)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부착된
전자태그를 태그별 입고용 고정형리더기에 인식



※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인계서 작성내역과 실제 운반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, 법령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운반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8조제3항,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